

노인인권보호지침

I 노인권리보호

1. 노인인권이란

‘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’ ‘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’ ‘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,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,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-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

2.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

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.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국가와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※ 노인 인권(권리)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

- 1).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
- 2).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3).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4).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5).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6).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
- 7).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8).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9).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10).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11).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II 노인학대

1. 노인학대정의

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) 즉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, 언어·정서적, 성적,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

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자기방임 및 유기를 말한다.

2. 노인학대 유형

- **신체적학대**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
- **정서적학대**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- **성적학대** :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- **경제적학대** :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- **방임** :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**자기방임** :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**유기** :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3.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

1) 시설종사자의 역할

-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,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.
-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.
-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.
-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,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.
- 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.
-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⑦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 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- ⑧ 종사자는 본 지침의 노인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, 급여 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) 시설의 역할

- ① 시설 내 건의함,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 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,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.
-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,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,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.
-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.
- ⑤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,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상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(보호자)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3)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절차

☎ 1577-1389(1년 365일 빨(8)리 구(9)해 주세요) 또는 129

☞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☞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)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
2)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3) 노인복지상담원,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